

서울특별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836
----------	------

2021년 12월 17일
교육위원회

I. 심사경과

1.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1년 10월 15일, 전병주 의원 발의
2. 회부일자 : 2021년 10월 20일 회부
3. 상정일자

- 제303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6차 교육위원회
(2021년 12월 17일 상정, 원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전병주 의원)

1. 제안이유

- 코로나19 확산으로 원격수업이 확대 운영됨에 따라 교육활동에 필요한 교육용 스마트 기기 등을 학생 및 교원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용 스마트 기기 등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 7조의2)

III.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개정조례안은 2021년 10월 15일 전병주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2836호로 발의되어 2021년 10월 20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원격수업이 확대 운영됨에 따라 교육활동에 필요한 교육용 스마트 기기 등을 학생 및 교원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개정 취지에 대한 검토

-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각 급 학교에서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원격수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원격수업 시행과 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 및 인프라 구축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 대표적으로 2020년 10월 「초·중등교육법」 제24조제3항이 신설되어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방송이나 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해 원격수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었고,¹⁾

1) 「초·중등교육법」 제24조(수업 등) ① 학교의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시작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 수업은 주간(晝間)·전일제(全日制)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이나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야간수업·계절수업·시간제수업 등을 할 수 있다.

③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업 운영

지난 2021년 9월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이(이하 「원격교육법」, 2022.3.25. 시행) 제정되어 교육감이 원격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교육용 정보통신기기와 원격교육콘텐츠 개발·보급 등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²⁾

- 이러한 변화 속에서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3년 간(2019~2021년) 학생을 대상으로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을 전개하여 총 13만 5천여 대의 스마트기기를 지원했으며,³⁾ 2022년 2월부터는 중학교 1학년 전체를 대상으로 스마트기기를 대여하는 「스마트기기 휴대 학습 ‘디벗’ 사업」을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⁴⁾

[표] 최근 3년 간(2019~2021년) 서울시교육청 학생 대상 스마트기기 지원 현황⁵⁾

(단위 : 대)

사업명	소관부서	연도	대상	지원대수	기타
교육부 무선인프라 사업(스마트기기)	교육연구 정보원	2019	초등, 중학교	5,000	교육부 특교(국비)

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한다.

1.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

2. 현장실습 운영 등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④ 학교의 학기·수업일수·학급편성·휴업일과 반의 편성·운영, 그 밖에 수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7조(학교등의 원격교육 인프라)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등의 원격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디지털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시스템의 구축·운영
2. 원격교육콘텐츠의 개발·보급
3. 교육용 정보통신기기 등 원격교육에 필요한 교구·장비 및 정보통신망 등 시설(유지관리비용을 포함한다)
4. 원활한 원격교육을 위한 지원인력의 배치
5. 그 밖에 학교등의 원격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교등의 원격교육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예산 또는 교구·장비 및 시설의 지원 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과 협의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학교등의 원격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용 정보통신기기에 대한 권장 기준을 정하여 공표할 수 있다.

3) 서울시의회 요구자료(요구번호 2570), ‘최근 3년 간 학생을 대상으로 스마트기기(노트북, 태블릿 등) 지원 현황’(제출일 2021.11.18.)

4) 「스마트기기 휴대 학습 ‘디벗’ 종합 실행계획」(중등교육과-37474, 2021.11.9.)

5) 서울시의회 요구자료(요구번호 2570)을 정리하여 재구성함

사업명	소관부서	연도	대상	지원대수	기타
		2020		900	
혁신학교 무선 인프라 사업 (스마트기기)	교육연구 정보원	2020	초등·중·고등학교	7,275	
학생용 스마트기기 보급(스마트기기)	교육연구 정보원	2021	초중고, 특수, 각종학교	30,182	재정결함보조금 미지원교 및 국립학교 제외, 실제 대수는 더 많을 수 있음
저소득층학생원격수업지원 (스마트기기)	참여협력 담당관	2020	원격수업이 곤란한 초,중,고고생 (대상자 구분 ×)	59,899	서울시 40%, 자치구 20% 분담
온라인콘텐츠활용교과서 선도학교	중등교육과	2020	58개교 (초16, 중18, 고24)	9,743	국고지원금 40%
		2021	64개교 (초25, 중14, 고25)	10,090	
직업계고학점제운영지원 (NCS학습모듈스마트기기 보급)	진로직업 교육과	2021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12,000	
소 계				135,089	

주) 단, 학교 자체예산 또는 자치구 지원 등을 통하여 개별 구축한 경우는 제외

- 그러나 원격교육을 목적으로 한 스마트기기 지원이 확대되고 원격수업에 대한 관계 법령의 정비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자치법규에는 ‘교육용 스마트기기’의 정의는 물론 기기 지원 사업의 세부 조건과 기준 등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 동 개정조례안은 원격수업의 내실화를 위한 스마트기기 지원 근거와 목적, 제한 조건을 조례에 명시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과의 일관성 확보 측면에서 시의적절한 입법조치로 사료됩니다.

나. 주요 조문별 검토

- 안 제2조는 제1호에서 규정된 원격수업의 정의를 시공간적 제약에서

벗어나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해 진행하는 수업활동으로 구체화하고, 제3호를 신설하여 “교육용 스마트 기기”를 교수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태블릿PC 또는 노트북 등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원격교육법」 제2조제3호6)가 ‘원격교육’을 시공간적 제약에서 벗어나 정보통신매체나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교육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는 바, 동 개정조례안이 원격수업의 정의를 상위법령과 동일하게 명시하는 것은 별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한편 안 제7조의2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속 학교의 장이 지정한 스마트기기를 학생과 교원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기를 지원할 경우 교육용 소프트웨어와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는 「원격교육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규정된 스마트기기 지원 근거를 동 조례에 명시하면서 그 범위를 “예산의 범위 내”로 명확히 하고,

지원된 기기가 교육활동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교육용 소프트웨어 설치 및 기기 소지에 대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동 조례의 방향성과 취지에 맞게 스마트기기 지원이 이뤄지도록 한

6)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등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라.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마.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

2. “정보통신매체”란 유선·무선·광선 또는 그 밖의 방식으로 정보의 검색·수집·저장·가공·처리·송신·수신 및 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통신설비, 컴퓨터 또는 우편물 등을 말한다.

3. “원격교육”이란 교육기관이 지능정보기술(「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을 말한다)과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시간적·공간적 제약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실시하는 일체의 교육활동(다수의 교육기관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 “원격교육콘텐츠”란 원격교육을 위하여 사용하는 부호·문자·도형·색채·음성·음향·이미지·영상 및 그 복합체와 관련된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것입니다.

-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 제7조의2가 교육감으로 하여금 교육용이라는 목적 하에서 원격수업용 스마트기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부합되는 입법적 조치라 하겠는바 조례 개정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로 서울시교육청은 동 조례안과 관련하여 별도의 의견이 없음을 밝힌 바 있습니다(행정관리담당관-17685, 2021.10.29.).⁷⁾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V. 토론요지 : 없음.

VI. 수정안의 요지 : 없음.

VII. 심사결과 : 원안 가결(재석의원 전원 찬성).

VI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IX.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7) 서울특별시교육청 중등교육과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 제출'(2021.10.29.) 참고.

서울특별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제1호의 “교수 및 학습 활동이 서로 다른 시간 또는 공간에서”를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교수·학습활동으로 시간적·공간적 제약
에 구애 받지 않고”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교육용 스마트 기기”란 교수·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테블릿PC 또는
노트북 등 유사한 기능을 갖춘 교육용 기기를 말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교육용 스마트 기기 지원 등)

- ①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학생 및 교원에게 소속 학교의 장이 지정한
스마트 기기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육용 스마트 기기를 지원할 때에는 교육용 소프
트웨어,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 등을 반드시 설치하고, 학생 및 교원이
기기를 소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③ 교육감은 교육용 스마트 기기가 지원받은 학생이 안전하고 생산적인 교육
활동에 필요한 학습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그 밖에 교육용 스마트 기기의 교육적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
감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원격수업”이란 <u>교수 및 학습 활동이 서로 다른 시간 또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수업형태로서 실시간 쌍방향 수업,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과제 수행 중심 수업 등 다양한 방식의 수업을 말한다.</u></p> <p>2. (생략)</p> <p>3. <신설></p>	<p>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p> <p>1. ----- <u>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교수·학습 활동으로 시간적·공간적 제약에 구애받지 않고 -----</u> -----.</p> <p>2. (현행과 같음)</p> <p>3. <u>“교육용 스마트 기기”란 교수·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테블릿PC 또는 노트북 등 유사한 기능을 갖춘 교육용 기기를 말한다.</u></p>
<p><신설></p>	<p><u>제7조의2(교육용 스마트 기기 지원 등)</u></p> <p>① <u>교육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학생 및 교원에게 소속 학교의 장이 지정한 스마트 기기를 지원할 수 있다.</u></p> <p>② <u>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육용 스마트 기기를 지원할 때에는 교육용 소프트웨어,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 등을 반드시 설치</u></p>

하고, 학생 및 교원이 기기를 소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은 교육용 스마트 기기가 지원받은 학생이 안전하고 생산적인 교육활동에 필요한 학습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교육용 스마트 기기의 교육적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